

	<h2 style="margin: 0;">재수강 운영 규정</h2>	문서번호	MSU-
		제정일자	2015. 11. 20.
		최종개정일자	
		담당부서	교무입학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목포과학대학교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 재수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신청과목) 당해 학기에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과목 또는 C(2.0) 이하의 성적을 취득한 과목의 경우 그 다음 해당 학기에 재수강을 신청 할 수 있다.

제3조(신청학점) ①정규학기에 신청하는 재수강 학점은 학칙 제42조(교과이수단위)에 의거 최대 신청학점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.

②계절수업으로 신청하는 재수강 학점은 계절수업 최대 신청학점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.

제4조(수강등록) ①정규학기에는 신청학기 등록금 외에 별도의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는다. 다만, <별지 1>재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계절수업 수강을 원하는 학생은 신청학점에 따라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, 수강료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5조(성적평가) ①정규학기에 신청한 재수강 과목의 성적평가는 정규학기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최대 A0까지 성적을 인정하며, 계절수업에 신청한 재수강 과목의 성적평가는 정규학기의 평가방법을 준용하되, 최대B+까지 성적을 인정한다.

제6조(재수강지도) 교무입학처에서는 재수강신청자 명단을 학과에 통보하고, 학과장은 지도교수, 담당교수와 재수강 신청자를 지도한다.

제7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별지 1>

재 수 강 신 청 서								
학 과		학 번		성 명				
연락처								
■ 재수강 신청 내역								
기 이수 교과목						재수강 교과목		
연 번	교과 구분	교과목명	학년도	학기	학점	취득 성적	교과목명	학점
1								
2								
3								
4								
5								
위와 같이 재수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								
20								
신청인 :								인
목포과학대학교총장 귀하								